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49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복기왕 · 박용갑 · 이광희
이상식 · 김영배 · 최혁진
양부남 · 김한규 · 염태영
손명수 · 김우영 · 문진석
송재봉 · 강준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우, 폭염, 냉해 등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이에 따른 농어가의 경제적 피해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재난 위험도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지원 여력이 부족하여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보험 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가입자가 영세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따라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재정지원) ① (생 략)</p> <p><u><신 설></u></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제1항</u>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u>제1항</u>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p>	<p>제19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 음)</p> <p>② 정부는 <u>제1항</u>에도 불구하고 <u>재해보험가입자가 영세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따라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u></p> <p>③ ----- ----- -----<u>제1항 및 제2항</u>----- ----- -----.</p> <p>④ ----- ----- ----- ----- -----<u>제1항 및 제2항</u>----- -----.</p>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
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